

#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건물 -

고유번호 1103-1996-560549



[건물]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-81

	표 제 부	】 ( 건물의 표시 )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 및 건물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<del>1</del> <del>(전 1)</del>	<del>1993년11월30일</del>	<del>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인동</del> <del>72 81</del>	철근콘크라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가구용 단독주택(8가구) 1층 29.19㎡주차장 2층 94.92㎡주택(2가구) 3층 94.92㎡주택(2가구) 4층 94.92㎡주택(2가구) 지층 64.55㎡ 주택(2가구) 옥탑 11.88㎡ 물탱크	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4월 24일 전산이기
2		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-81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다길 5	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가구용 단독주택(8가구) 1층 29.19㎡주차장 2층 94.92㎡주택(2가구) 3층 94.92㎡주택(2가구) 4층 94.92㎡주택(2가구) 지층 64.55㎡ 주택(2가구) 옥탑 11.88㎡ 물탱크	도로명주소 2012년6월28일 등기

[	갑 구 ]	( 소유권에 된	<u></u> 관한 사항 )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)	소유권보존	1993년11월30일 제48414호		소유자 천혜봉 341113-***** <del>서울 종로구 숭인동 72-11</del>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4월 24일 전산이기

열람일시 : 2024년06월25일 17시25분29초

#### [건물]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-81

				1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-1	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	2007년12월6일 전거	천혜봉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36-2 효창마운틴빌 비-201 2008년6월25일 부기
2	소유권이전	2008년6월25일 제40840호	2008년3월27일 유증	소유자 천진서 761007-******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인동 72-11
2-1	2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	2011년10월31일 도로명주소	천진서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5(숭인동) 2013년8월2일 부기
3	<del>압류</del>	<del>2022년1월21일</del> 제 <del>2741호</del>	2022년1월21일 압류(주거재생 과 1541)	권리자 서울특별시종로구 1111
4	3번압류등기말소	2022년9월26일 제33450호	2022년9월26일 해제	

## 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 기록사항 없음

-- 이 하 여 백 --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

열람일시 : 2024년06월25일 17시25분29초

<sup>\*</sup>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 \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<sup>\*</sup>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으로 표시함.

<sup>\*</sup>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### 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 주 의 사 항 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03-1996-560549

[건물]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-81

#### 1. 소유지분현황 ( 갑구 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천진서 (소유자)	761007-*****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5(숭인동)	2

#### 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 갑구 )

- 기록사항 없음

## 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 을구 ) - 기록사항 없음

#### [참고사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출력일시 : 2024년 06월 25일 17시 25분 29초